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강수정 의원 발의]

|      |      |
|------|------|
| 의안번호 | 2039 |
|------|------|

발의일자 : 2020. 11. 17.

발 의 자 : 강수정 의원

찬 성 자 : 박찬길 의원

## 1. 제안이유

금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및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장애인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등의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장애인 체육 장려를 위한 사항 규정(안 제3조)

다. 장애인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 사항 규정(안 제5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및 제29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우수선수"란 전국 또는 시·도별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선수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선수를 말한다.

6. "장애인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장애인체육의 진흥)**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체육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체육동호회)** 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회원의 자격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2.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하되, 종목의 특성에 따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최근 1년간 1회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동호회에는 비장애인도 명예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나 상시 구성

인원수에서는 제외한다.

**제5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단체 또는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우수선수 또는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행사 및 국내·외 교류 지원
4.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장애인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체육대회 개최)**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연1회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체육대회의 개최를 장애인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사업의 보조 및 위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1. 2. 19.] [법률 제17480호, 2020. 8. 18., 일부개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③직장의 장은 종업원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이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7.>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0. 6. 4.] [법률 제16733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19.>

**제29조(복지 연구 등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평가 및 장애인 체육활동 등 장애인 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8. 6. 12.>

③ 삭제 <2018. 6. 12.>

④ 삭제 <2018. 6. 12.>

**제29조의2(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등)** ① 제29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복지진흥 등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복지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관리, 조사·연구·정책개발 및 국제개발 등의 국제협력 사업
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 장애인복지 관련 교육, 홍보, 컨설팅
3.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및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개발·지원
4.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 지원
5. 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등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 지원
6. 장애인 재난안전 대응 지침 개발·보급 등 장애인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⑤ 개발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 6. 12.]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6. 20.] [법률 제15272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